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52호 2024. 2. 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4-7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4-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4-10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4-11호 정선(신동)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67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9
- 정선군 공고 제2024-7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

- 정선군 공고 제2024-78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6
- 정선군 공고 제2024-80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공사 완료 공고
.....36
- 정선군 공고 제2024-126호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37
- 정선군 공고 제2024-127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44
- 정선군 공고 제2024-129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56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2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66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3호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1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4-7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9-38호(2019.03.08.)로 최초 결정 고시 및 정선군 고시 제2019-133호(2019. 6. 21.)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변경 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가.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동탄지구) 사업
 - 나. 명 칭 : 동탄지구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위 치	규 모	기시행	금회시행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사북읍 사북리 375-9번지 일원	A=14,376㎡	-	A=14,376㎡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 황규연
 -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19. 6. 21. ~ 2023. 9. 30.

나. 변 경 : 2019. 6. 21.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사북읍 사북리	375-9	잡	14,376	14,37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	한국광해 광업공단
계		1필지		14,376	14,376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4-9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3-41(2003. 5. 9.)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사업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 2-14호선	L=256m, B=8.0~1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L=256m, B=8.0~10.0m, A=2,206㎡ ▪(변경) L=256m, B=8.0~10.0m, A=2,30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노상균)

나.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5. 사업기간

가.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나.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사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당 초	변 경					
1	정선읍 봉양리	919-5	제	271	139	172		국(건설부)	-	-	-
2	정선읍 애산리	432-504	도	196	196	196		정선군	-	-	-
3	정선읍 애산리	432-505	대	858	22	16		정선군	-	-	-
4	정선읍 애산리	592-11	제	2,142	1,665	1,781		국(건설부)	-	-	-
5	정선읍 애산리	592-3	대	794	8	0		정선군	-	-	-
6	정선읍 애산리	592-4	대	1,416	12	0		정선군	-	-	-
7	정선읍 애산리	592-8	대	2,676	8	0		정선군	-	-	-
8	정선읍 애산리	592-9	장	3,450	122	74		정선군	-	-	-
9	정선읍 애산리	432-358	도	4,048	34	35		정선군	-	-	-
10	정선읍 애산리	432-314	천	2,057	0	28		정선군	-	-	-
계				15,851	2,206	2,302					

정선군 고시 제2024-10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고한읍 고한리 일원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개설 현황 및 향후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군계획시설(주차장) 구역을 변경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104-3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④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3,096	증) 1,186	4,282	강원도고시 제207호 (98.10.15)	
변경	⑤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1,722	증) 947	2,669	강원도고시 제207호 (98.10.15)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주차장	면적 변경 -A=3,096㎡ → 4,282㎡, 증) 1,186㎡	◦ 고한12리 일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부지면적 변경
⑤	주차장	면적 변경 -A=1,722㎡ → 2,669㎡, 증) 947㎡	◦ 고한17리 일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부지면적 변경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게재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4-11호

정선(신동)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정선(신동)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에 기반시설(주차장, 공공공지)을 확충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1-32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주차장	신동읍 조동리 201-32번지 일원	-	증) 578	578	금 회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578㎡	◦ 주거밀집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신동읍 조동리 197-34번지 일원	-	증) 478	478	금 회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A=478㎡	◦ 주거밀집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공지 신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지도 : 게재
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도 열람이 가능함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67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분리하여 산업단지 기업의 입주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4조)

- 정선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한 투자유치위원회 분리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 연임)
-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마련
-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 반영
-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

나. 회의 등(안 제1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무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 듣거나 자료 제출 요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수당 등(안 제17조)

-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전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 연락처: 전화(033 - 560 - 2352), 팩스(033 - 560 - 2594)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2. 본인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4.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장에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52 1160 405 1200"><신 설></p> <p data-bbox="252 1361 405 1402"><신 설></p>	<p data-bbox="852 293 1386 398">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 data-bbox="852 427 1386 600">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 data-bbox="852 629 1386 801">4. <u>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 data-bbox="852 831 1386 1003">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 data-bbox="852 1032 1386 1137">6. <u>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u></p> <p data-bbox="852 1167 1386 1339">⑦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u></p> <p data-bbox="818 1368 1386 1541">제16조(회의 등)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u></p> <p data-bbox="852 1570 1386 1809">②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 data-bbox="852 1839 1386 2011">③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④ <u>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⑤ <u>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 관련 법 규 >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강원자치도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 1. 기업유치위원회
-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위원회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투자유치위원회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다만,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11.8., 2023. 6. 9.>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4-7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체육시설 및 체육진흥의 주민 요구 증가와 관리 업무 과다에 의한 체육시설팀 신설 및 관리 업무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설국 문화체육과 내 체육진흥팀을 체육진흥팀과 체육시설팀으로 분리

○ 문화체육과 내 체육시설담당 신설

- 반영직급 :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1명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p>증 1명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p> <p>감 1명 (지방사무운영·시설관리주사보) 1</p>	<p>증 1명 (지방행정주사보) 1</p> <p>감 1명 (지방행정·세무주사) 1</p>	<p>증 1명 (지방행정·시설주사) 1</p> <p>감 1명 (지방행정주사보) 1</p>	<p>증 1명 (지방시설주사보) 1</p> <p>감 1명 (지방토목운영주사) 1</p>
정선읍	고한읍	화암면	
<p>증 1명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p> <p>감 1명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p>	<p>증 1명 (지방행정·전산주사) 1</p> <p>감 1명 (지방행정주사) 1</p>	<p>증 1명 (토목운영주사) 1</p> <p>감 1명 (지방시설주사보) 1</p>	

나. 정원 상계조정 내역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29일(10일간)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iran697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증원 없이 정원 내 조정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4-78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체육시설 및 체육진흥에 대한 주민 요구 및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진흥팀을 2개팀으로 분리 신설
- 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내역 반영 및 담당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가. 체육진흥팀 →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분리
 - 문화체육과 내 체육시설담당 신설
 - 체육시설담당 :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 나. [별표 1] 업무분장표 시설국 환경과 소관의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를 시설국 전략산업과로 조정 및 담당 명칭 변경
 - 전략산업과 내 그린뉴딜담당 명칭 변경
 - (기존) 그린뉴딜담당 → (변경) 에너지담당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29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iran697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본청 업무분장표(제6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관		(생략)
총무행정관		(생략)
행정국장		(생략)
회계과		(생략)
세무과		(생략)
민원과		(생략)
가족행복과		(생략)
복지과		(생략)
경제과		(생략)
안전과		(생략)
시설국장		(생략)
관광과		(생략)
문화체육과		(생략)
전략산업과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
	2	폐광기금 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
	3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
	5	총무계획 작성 및 관리
	6	강원랜드 주식, 이사(理事)관리
	7	강원랜드 협력업무 전반
	8	(재)3·3기념사업회 지원
	9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협력
	10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11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
	12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관리
	13	기업 유치 업무
	14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관리
	15	임대공장 관리 및 개·보수사업
	16	정선군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7	농공단지 특별회계
	18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시설 지원
	19	중소기업 등록 및 지원
	2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1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관리) 업무
	22	광업 및 광업권 관리 업무
	23	광해방지사업 지원 관리
	24	비축무연탄기금사업 추진
	25	중소기업 판로 마케팅 지원
	2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업무
	27	폐광지역 노후주택 개량사업
	28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9	전략산업업무전반
	30	정선군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관리
	31	국가광물 정보센터 운영지원
	32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절약업무
	33	송전선로(송주법) 관련 업무
	34	탄소배출권 연계사업
	35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3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7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38	수소연료전지 업무
	39	신재생에너지 지역 및 주택지원사업
	40	전기사업(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허가
	4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42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43	발주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4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45	전기, 가스 안전점검
	46	에너지바우처, 연탄, 등유 지원사업
	47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48	도시가스(LNG) 공급사업
	49	석유·가스 일반
	50	LPG 배관망 구축사업
	51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52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
	53	야생화 요정 빛의 정원 사업
	54	야생화 6차산업 R&D 육성사업
	55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업
	56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지원
	57	야생화마을 아트바이크 조성
	58	사북역 일원 별빛광장 조성
	59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59	민자사업장 사후 관리
	60	지역개발사업 전반
농업정책과		(생략)
유통축산과		(생략)
환경과	1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2	수계·권역별 수질관리 전반
	3	맑은 물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4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보전행사 추진
	5	토양오염원 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추진
	6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안전진단 추진
	7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환특회계)
	8	공해방지
	9	환경신문고 운영

10	군립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도립공원에 관한 협의
12	군립공원 지정승인신청 및 군립공원 개발사업
13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14	동강녹색 모험의 숲 개발사업
15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 관리
16	동강 생태체험 학습지 관리
17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항
19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20	환경경영시스템
21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22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3	환경단체 관리
24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업무
25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26	수질오염총량제 및 전국오염원 조사
27	수질측정망(지점) 관리 및 수중생태모니터링 추진
28	생태하천 복원사업
29	비점오염 관리지역 저감사업 및 시설관리
30	특정토양관리대상 시설 인허가
31	유해화학물질 관리
32	실내공기질 및 라돈관리
33	전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4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35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3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7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38	청소행정의 총괄
39	환경미화원 총괄 및 조정관리
40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41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시행
4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3	폐기물관리업무
44	재활용분리수거 및 시책 추진
45	음식물 폐기물 처리
46	국토대청결 운동
47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48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관리
49	석면 건축물 관리
50	잔류성 유기오염물 신고 및 관리
5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52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53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5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55	생활악취 및 배출시설 관리
	56	매립장 운영관리
	57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8	생활쓰레기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유지관리
	59	반입 폐기물 부산물 처리
	6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조기폐차, 매연저감(일반, 건설기계)장치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통학차량 LPG교체,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
	61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62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
	6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64	환경보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업무
	65	먹는물 유통제품 조사
	66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중소기업장 연료전환사업
	6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68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계획 및 관리대책
	69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7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 화물, 이륜)
	71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지도점검
	72	소음·진동 관리
	73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시가지 노면청소 용역)
	7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수립
	75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수립
	76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77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78	환경오염사고 대비 위기관리 대책추진
	79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산림과		(생략)
건설과		(생략)
도시과		(생략)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존 사무분장의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4-80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2010. 7. 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7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나.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시설개선 공사(임계 정수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 적	금회 시행	
수도공급설비	임계정수장	A=5,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 전 지 : B3.0m×L23.0m×H4.0m×2지 ▪ 완속여과지 : B8.0m×L12.0m×3지 ▪ 정배 수 지 : Ø8.3m×H4.2m(250㎡ STS원형) ▪ 가압펌프장 : W2.0m×L2.0m×H2.5m(1,500㎡/일)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읍 정선로 1047)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0. 12. 11.

나. 준공일 : 2023. 12. 31.

정선군 공고 제2024-126호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체육진흥협의회를 지역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설치 의무조항 유무(협의회를 둔다, 한다 등) 개정
- 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 변경(안 제3조)
 - 정선군체육회 회장 포함
- 다. 개정사항 추가(한자어 수정)
 - 자중 → 사람 중
 - 회무 → 협의회 사무

3.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체육과)
- 전 화: 033-560-2547
- 팩 스: 033-560-2593
- 이 메 일: karenina55@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체육진흥협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 을 “(설치 및 기능)”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수” 를 “정선군수” 로, “교육장” 을 “정선군체육회장(이하 “체육 회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중” 을 “사람 중”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 를 “협의회의 사무”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분기별로” 를 “연”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을 “문화체육과장” 으로, “스포츠지원담당주사가” 를 “체육진흥담당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정선군 체육진흥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 ~ 3. (생 략)</p> <p>제3조(구성) ① (생 략)</p> <p>②의장은 <u>군수</u>가 되고 부의장은 <u>교육장</u>이 된다.</p> <p>③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 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u>자중</u>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인사 2인이상이 포 함되 어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 모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 다.</p> <p>② (생 략)</p> <p>제6조(회의) ① (생 략)</p> <p>②정기회의는 <u>분기별로</u> 1회 개최</p>	<p>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 흥법」 제5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협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정선군수</u>----- <u>정선 군체육회장</u>(이하 “<u>체육회장</u>” 이 라 한다)---.</p> <p>③----- ----- ----- <u>사람 중</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u>협 의회의 사무</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연</u> -----</p>

현 행	개 정 안
<p>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p> <p>③·④ (생 략)</p> <p>제7조(간사등) ① (생 략)</p> <p>②간사는 <u>문화관광과</u>장이 되며 서 기는 <u>스포츠지원담당주사</u>가 된다.</p> <p>③·④ (생 략)</p>	<p>-----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문화체육과장</u>----- <u>체육진흥담당</u>이 -----.</p> <p>③·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정선군 공고 제2024-127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민둥산문화체육센터 및 정선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게 체육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둥산문화체육센터”의 운영요금 및 위탁 기준 마련(별표 1, 2, 3 및 부칙)
- 나. 이용요금 등 정비(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체육과)
- 전 화: 033-560-2547
- 팩 스: 033-560-2593
- 이 메 일: karenina55@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영장 및 정선골프연습장”을 “수영장, 정선골프연습장 및 민동산문화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주 월요일(다만, 정선골프연습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제10조제1항 중 “정선골프연습장”을 “정선골프연습장, 민동산문화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7. 민동산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위탁관리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시간) ①·② (생략)</p> <p>③ <u>수영장 및 정선골프연습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략)</p> <p>4. <u>매주 월요일</u></p> <p>5. (생략)</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 시설 중 정선종합경기장, 정선국민체육센터, <u>정선골프연습장</u>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p> <p>② (생략)</p>	<p>제9조(사용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영장, 정선골프연습장 및 민동산문화체육센터</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매주 월요일(다만, 정선골프연습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u></p> <p>5.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 ----- <u>정선골프연습장, 민동산문화체육센터</u>-----.</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체육시설 적용범위

1. 체육시설 : 정선종합경기장 내의 경기시설(주경기장, 정선골프연습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 및 농구장), 정선국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민둥산문화체육센터,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궁도장 등)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딸려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6:00~09:00	06:00~09:00
주간	09:00~18:00	09:00~17:00
야간	18:00~22:00	17:00~22:00

○ 민등산문화체육센터

구 분	연중	비고
화요일~토요일	06:00~22:00	
일요일	09:00~18:00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

○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체육행사	97,000	126,000	
	일반행사	180,000	230,000	
	연습사용	90,000	114,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체육행사	30,000	40,000	
	일반행사	60,000	80,000	
	연습사용 (단체)	6,000	6,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2,000	2,000	2시간 기본
육상트랙	체육행사	38,000	51,000	
	일반행사	92,000	127,000	
	연습사용 (단체)	6,500	7,3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400	1,600	2시간 기본
체육관	체육행사	74,000	89,000	
	일반행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 (단체)	81,000	91,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000	1,300	2시간 기본
실외인라인장 (농구장 포함)	무 료			
테니스장숙소동	2인1실		4인1실	
	15,000		30,000	

※ 1일 기준

○ 정선종합경기장 내 정선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구분	이용자	이용료	비 고
수시 이용자	1회	어른	10,000	○수시이용자(1회 사용시간) : 60분 ○쿠폰 및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정기 이용자	1개월	어른	100,000	○락카이용자 사용료 1개월 : 10,000원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청소년	50,000	
		어린이	30,000	
쿠폰 이용자	3개월	10매	100,000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0매	150,000	
		30매	200,000	

※ 제4조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일일이용	2,500	2,000	1,400	
	단체 일일이용	2,000	1,300	1,000	20명 이상
	수강료(주3회)	30,000	30,000	30,000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체육관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74,000		89,000	
	일 반 행 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단체)	81,000		91,000	2시간기본
	연습사용(개인)	1,000		1,300	2시간기본
비 고	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민등산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설구분		구분	이용료		비 고
이용구분					
체육관	체육행사	평일	74,000		2시간기본
	체육행사	휴일	89,000		
	일반행사	평일	138,000		
	일반행사	휴일	198,000		
	연습사용(단체)	평일	81,000		
	연습사용(단체)	휴일	91,000		
	연습사용(개인)	평일	1,000		
	연습사용(개인)	휴일	1,300		
체력단련실		1일	일반	3,000	
			군인 및 청소년	2,000	
		1개월	일반	35,000	
			군인 및 청소년	30,000	
탁구장		1일	일반	3,000	
			군인 및 청소년	2,000	
		1개월	일반	30,000	
			군인 및 청소년	20,000	
스쿼시		1일	일반	3,000	
			군인 및 청소년	2,000	
		1개월	일반	40,000	
			군인 및 청소년	30,000	
전시·회의실			무료		
밴드연습실					
마주침공간					
프로그램실					
댄스 풍물연습실					
필라댄스					
가상현실 스포츠실					
동전노래방					
다목적실					

※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 정선군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단위	사용료	비 고
전 기	1 KW당	관허요금	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 x 사용시간)
수 도	1 일	20,000	입장객 500명이하
		40,000	입장객 501~1,000명이하
		60,000	입장객 1,001~5,000명이하
		80,000	입장객 5,001~10,000명이하
		100,000	입장객 10,000명이상
샤 위	1인 1회	400	
마 이 크	1일 1대	5,000	
방송음향	1 일	40,000	

관계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정선군 공고 제2024-129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예술단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물가상승률과 타 지역 예술단 임금체계를 반영한 임금구조 개선으로 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단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별표 2] 단원의 수당 변경
- 단원의 출연료 및 연습비 기준 변경
o (기존)

명예단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연습비
200,000원	180,000원	150,000원	120,000	60,000원

o (변경)

명예단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	10년 이상	7년~10년	3년~7년	3년 미만	연습비
210,000원	180,000원	170,000원	160,000원	150,000원	79,000원

나. [별표 8]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 변경
- 상임단원 직책별 기본급여 지급기준 변경

◦ (기존)

구 분	지급기준
상임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 (변경)

구 분	지급기준
단 무 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2호봉 상당액
수석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
일반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다. [별표 11] 상임단원제수당 중 예능연구수당 신설

- 예술단원의 기량향상 도모를 위한 예능연구수당 신설

구 분	지급기준
예능연구수당	수석단원 15만원
	차석단원 12만원
	일반단원 10만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0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문화체육과

- 전 화 : 033 - 560 - 2563
- F A X : 033 - 560 - 2593
- E-mail : jjdiem@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8,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단원의 수당

□ 출연료 및 연습비

명예단원	비상임단원				단원(공통)
	10년 이상	7년 이상 ~ 10년 미만	3년 이상 ~ 7년 미만	3년 미만	연습비
200,000원	180,000원	170,000원	160,000원	150,000	79,000원

비고

- 위 표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8]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단무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2호봉 상당액
수석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
일반단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별표 11]

상임단원제수당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비고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책수당	수석·단무장 : 월 20만원 차석 : 월 10만원	
예능연구수당	수석 : 월 15만원 차석 : 월 12만원 일반단원 : 월 10만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예술단원의 인건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 관련 조문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예술단원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 군립아리랑예술단 지원 대상 예산
 - 임금체계 개선 전·후 인건비 연간 약 52,000천원 소요 (본 인상액은 용역결과 반영 적용)

4. 작성자

문화체육과 김 재 성

관계법령 발췌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급여 및 호봉) 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

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2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줄이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하여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 현재 우리군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중증장애인 등)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추가
- 우리군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둘째 자녀 이상 자녀로 감면 대상 확대
- 감면은 대상자 본인 신청주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정선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560-2528
- 팩스: 033-560-2109
- 이메일: leejun247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셋째” 를 “둘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m³ 이상인 경우는 10m³을 경감하고,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하며, 제7호의 경우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 요금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p> <p>1. ~ 7. (생략)</p> <p>8. 다자녀가구(<u>셋째</u>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보호신설 2018.1.12.>, <u><신설></u></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둘째</u> ----- ----- ----- ----- ----- ----- -----</p> <p>9.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p>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3호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의거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폐지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 121호 일부개정 2009. 12. 30.)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인감증명서가 삭제됨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검토의견 결과 폐지 의견 제출, 단순 채주의 영수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이기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정선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560-2528
- 팩스: 033-560-2109
- 이메일: leejun247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u>인감증명서</u>,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 -----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